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한기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3. 9. 4.

발 의 자 : 한기호 · 임병현 · 신원식
김희곤 · 성일종 · 김영선
엄태영 · 김성원 · 지성호
노용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병역 기피·감면 목적의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, 병역판정
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
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.

그런데 병역 기피·감면 목적의 도망자·행방불명자, 병역판정검사
등의 기피자, 징집·소집 기피자 및 허위증명서를 발급하여 병역면탈
을 방조·조력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
보 게시 행위 및 병역면탈을 교사·방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사
법경찰관리의 수사가 불가능하여 병역기피 및 면탈 행위를 단속하는
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병역기피 행위, 병역면
탈을 조장하거나 교사·방조하는 행위 및 병역기피 목적의 허위증명
서 발급 등에 관한 단속 사무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정한 병역문화를

조성하기 위함(안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한기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58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1.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「병역법」 제86조, 제87조, 제87조의2, 제88조제1항, 제91조 및 제94조의2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

제6조제38호 중 “「병역법」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·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”를 “「병역법」 제86조, 제87조, 제87조의2, 제88조제1항, 제91조 및 제94조의2에 규정된 범죄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병역법」 제88조제1항의 경우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)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, 8급·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.	제5조(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0. (생략)	1. ~ 40. (현행과 같음)
41.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「병역법」에 규정된 병역 기피·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	41.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「병역법」 제86조, 제87조, 제87조의2, 제88조제1항, 제91조 및 제94조의2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
42. ~ 53. (생략)	42. ~ 53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 관할)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. 1. ~ 37. (생략) 38. 제5조제4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「병역법」 제86조에 규정된 병역기피·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 <단서 신설> 39. ~ 50. (생략)	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 관할) 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7. (현행과 같음) 38. ----- ----- ----- 「병역법」 제86조, 제87조, 제87조의2, 제88조제1항, 제91조 및 제94조의2에 규정된 범죄. 다만, 「병역법」 제88조제1항의 경우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. 39. ~ 50. (현행과 같음)
---	---